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통계등록부 요청 및 수집
필요 데이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- 가. 「통계법」 개정(법률 제19543호, 2024.1.19. 시행)에 따라 그간 실무적으로
운영하던 통계등록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사회보장
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
등록부 명시
- 나. 장애인일자리, 에너지바우처,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회보장 사업에
대한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 근거 명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5호 중 “「통계법」 제18조”를 “「통계법」 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 또는 같은 법 제18조”로 한다.

별표 제1호다목16)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같은 법 제32조”로 하고, 같은 목에 22) 및 23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) 「에너지법」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23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스포츠강좌이용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 공 요청) ① 법 제42조제1항제5 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 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	제20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 공 요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의2. (생 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5. 「통계법」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 조에 따라 협의를 한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	5. 「통계법」 제5조의3에 따른 <u>통계등록부 또는 같은 법 제1</u> <u>8조</u> ----- -----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756